
혁신금융 추진방향

2019. 3.

관계부처 합동

||| 목 차 |||

I . 추진배경	1
II . 추진방향	4
III . 주요 추진과제	5
1. 기업여신시스템 전면 혁신	5
2.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	10
2-1.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	10
2-2. 코스닥·코넥스시장 활성화	12
2-3. 자본시장 세제 개편	15
2-4. 금융감독 혁신	16
3.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	17
3-1.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확대	17
3-2. 서비스산업 혁신 견인	19
IV . 기대효과	20
V . 향후 추진계획	21

I. 추진배경

◇ 그간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

- '17년 이후 가계대출 위주의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창업·혁신부문 지원 등 「생산적 금융」을 위한 정책노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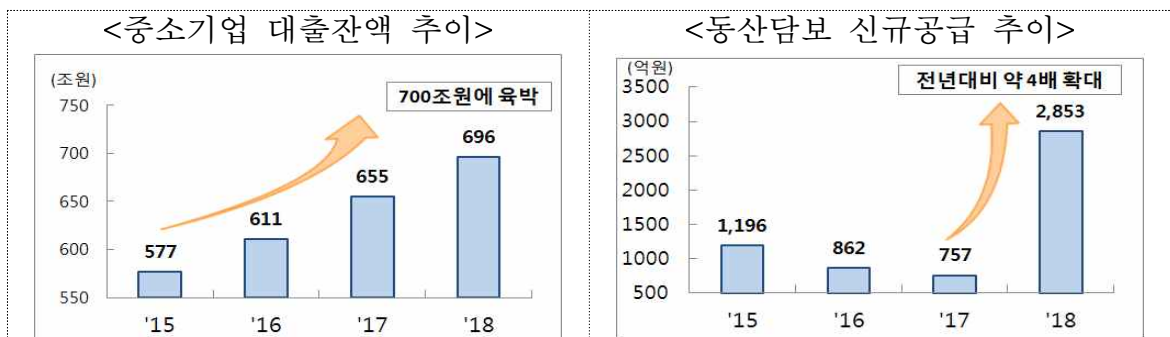
※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('18.1.11일),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(1.19일), 성장지원 펀드 운영방안(3.29일), 동산담보 활성화 추진전략(5.23일), 주택시장 안정 대책(9.13일), 은행권 DSR 도입(10.18일), 자본시장 혁신과제(11.1일) 등

- (창업·성장) 대규모 창업공간(청년혁신타운) 및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지원펀드(3년간 8조원) 조성, 동산담보 활성화 등 추진
- (자본시장) 코스닥벤처펀드 조성(3조원),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편의 제고, 건전성규제 개선* 등 추진
- (가계부채)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제한, DSR(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)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도모

* 중소·벤처기업 투자 및 코스닥 주식투자에 대한 자본규제(NCR) 완화 등

◇ 기업부문 자금흐름 개선, 가계부채 안정화 등 일부 성과

- (기업대출) '17년 이후 중소기업 대출 증가폭 확대(+86조원)
- 동산담보 신규공급도 금융권의 취급기피 등에 따른 침체를 벗어나 대폭 반등('17년 757억원 → '18년 약 2,900억원)



- 가계부채 증가율(5.8%)은 5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안정화

* 가계부채 증가율(%) : ('13년) 5.7 → ('15년) 10.9 → ('17년) 8.1 → ('18년) 5.8

□ (자본시장)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및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

* 신규상장(개)/日거래량(조원) : ('16년) 70/3.39 → ('17년) 78/3.69 → ('18년) 90/4.93

○ 클라우드 펀딩*이 창업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

* 조달실적(억원) : ('16년) 174 → ('17년) 280 → ('18년) 301

◇ **기업금융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**

□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, 기업 입장에서 혁신적 시도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·절차, 제도적 걸림돌 등도 여전히 존재

① 기업 신용도 평가시 과거 실적에 중점을 두어, 기술력·영업력 등 기업의 성장잠재력 반영이 미흡

- 부동산담보·보증 위주(65%)의 보수적 기업대출 관행 지속

② 기업당 투자금액이 너무 작아* 스케일업 지원에 한계

→ 우리 유니콘기업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해외자금이 주도

* 건당 벤처 투자금액(백만불, '16년) : 한국 1.6 < 중국 21.3, EU 5.4, 미국 14.1

③ 까다로운 규제·요건 등이 투자자들의 적극적 투자를 제약

* (예) 과도한 사모펀드 운용규제,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, 금융당국의 적발·처벌 위주 감독·제재 등

④ 新산업·기술기업 등에 대한 높은 코스닥 상장문턱, 코넥스 시장 거래부진* 등으로 증권시장의 자금조달·회수 기능 약화

* 日거래량·거래대금('18년) : 코스닥 7.9억주(4.9조원) ≫ 코넥스 35만주(48억원)

⑤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유인도 부족

⑥ 중장기적 시각에서 주력산업·서비스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자금공급체계 미흡

◇ 그간 생산적 자금흐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 → 향후 성장·혁신부문 자금공급 가속화를 위한 질적 도약 추진

◇ 그간 스타트업, 벤처 등 다양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'혁신 금융' 추진방향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청취·수렴

* '17.12월 청년창업 간담회, '18.5월 동산금융 활성화 간담회, '18.10월 스케일업 간담회, '18.12월 중소기업 현장방문, '19.1월 코넥스시장 토크콘서트 등

① (창업·중소기업) 기술력, 미래 성장성에 대한 고려 미흡

- ▶ "원천기술을 보유하거나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도 **은행의 보수적인 여신심사**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"(벤처기업)
 - * 중소기업 대출시 애로사항(중기중앙회, '17년) : 까다로운 대출심사(31.8%), 과도한 부동산담보 요구(19.4%), 신용보증서 위주 대출(16.3%) 등
- ▶ "미국처럼 기계·재고·IP 등 다양한 기업자산을 **한 번에 묶어 담보로 활용**하면 자금조달하기 훨씬 편리할 것 같아요."(IP 보유기업)

② (성장·혁신기업) 스케일업을 위한 자본시장 접근 곤란

- ▶ "유니콘기업 출현을 위해서는 '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지'가 아니라 '어떤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어떻게 키울지'를 고민해야..."(액셀러레이터)
- ▶ "**코스닥·코넥스 시장 활력부족** → 기업가치 저평가 → 상장유인 저하 → 시장정체 지속의 **악순환 해소**가 필요합니다."(코넥스상장기업)
- ▶ "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바이오 등 **신산업·기술기업 특성에 맞춰 코스닥시장 상장·퇴출제도**를 개선해야..."(특례상장 바이오기업)
- ▶ "해외 선진국처럼 자본시장에서 **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**할 수 있는 **세제유인**이 부족합니다."(VC)

③ (주력산업 기업) 경쟁력 제고, 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애로

- ▶ "조선·자동차 등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**전통 제조업체에 '비울 때 우산을 함께 쓰는' 장기적 관점의 지원**이 아쉽습니다."(중소조선사)
- ▶ "서비스업의 고용창출·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**관광·컨텐츠 등 유망 분야에 대해 과감한 지원·육성**이 시급합니다."(공유숙박 스타트업)

II. 추진방향

- ◇ 부동산담보·가계금융 위주 → 「미래성장성·자본시장」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
- ◇ 다양한 기업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**대출 - 자본시장 - 정책 금융**을 아우르는 맞춤형 과제를 선별·집중 추진

주요과제

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·공유하는 「혁신금융」 구축

대출

기업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:
부동산담보 → 미래성장성 위주로 개편

일괄담보
제도 정착



미래성장성·수익성
기반 평가



포괄적
상환능력 심사

자본 시장

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

①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

- 성장지원펀드 운용방식 개선
- 사모펀드, 대형IB 활성화 등

② 코스닥·코넥스시장 활성화

- 코스닥 맞춤형 상장기준 마련
- 코넥스 신속이전상장 전면 도입

③ 자본시장 세제 개편

- 증권거래세율 인하
-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

④ 금융감독 혁신

- 금융규제 불확실성 해소
- 검사·제재관련 절차 개선 등

정책 금융

선제적 산업혁신 지원

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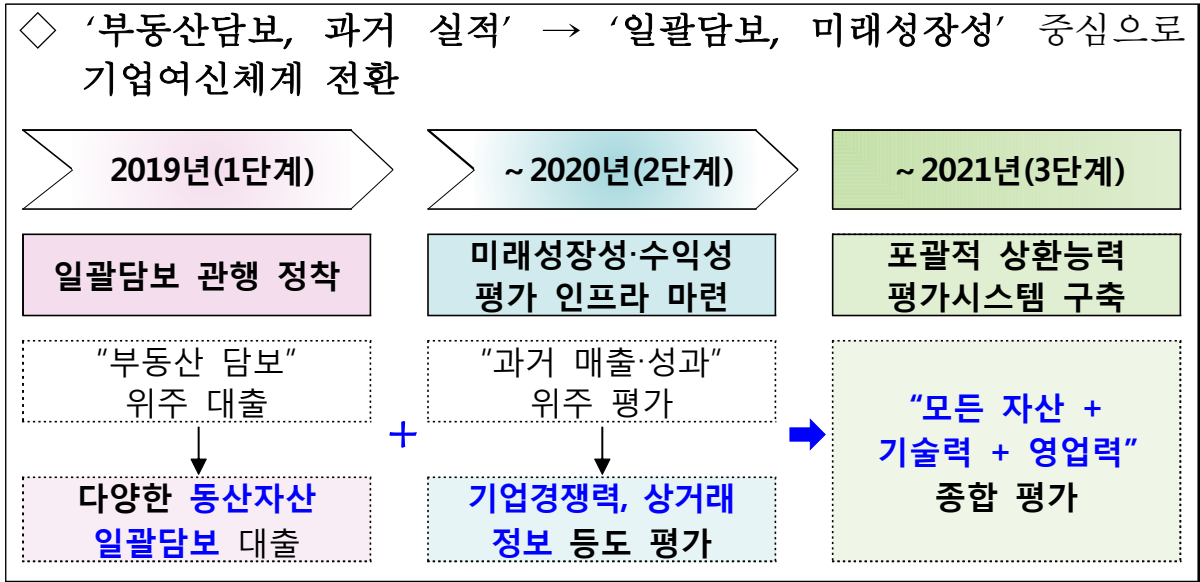
- 사업재편, R&D 집중 지원
(12.5조원)
- 시장 중심 구조조정 확대
(구조혁신펀드 최대 5조원)

② 서비스산업 혁신 견인

- 서비스업 구조개선
- **新서비스 창출 지원**
(5년간 60조원)

Ⅲ. 주요 추진과제

1 기업여신시스템 전면 혁신



(1단계) 일괄담보제도 정착 (2019년)

1 동산담보법 개정

- 기업의 다양한 이종(異種)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·취득·처분할 수 있는 '일괄담보제도' 도입
 - 개별자산일 때보다 집합적으로 평가되어 가치가 높아지는 이종자산 집합물*의 담보활용도 제고
 - * [현행] 기계, 재고, 채권, IP 등 자산종류별로 세분화하여 담보 설정 → [개선] 특허권이 체화된 화장품 제조기계, 화장품 재고, 매출채권을 일괄 담보화
- 이용대상 확대 등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
 - ① (이용대상) 법인 외에 '상호'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(상호 미등기자 99.8%)의 동산담보 활용 허용
 - ② (담보권 존속) 장기자금 공급 활성화 등을 위해 담보권 존속 기한(현재 5년) 폐지

③ (권리보호) 담보물 경매처분시 채권자 요구 없이도 경매배당금*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악의적 훼손·멸실 등의 처벌근거 마련

* 현재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라 채권자 요구가 없어도 당연 배당하는 부동산과 달리, 동산은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담보권자의 배당 요구 필요

④ (사적실행) 법원 외 민간시장 매각이 가능한 경우*를 명확화
→ 경매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발생 방지 및 회수가치 제고

* [현행] '정당한 사유'시 사적실행 가능 → [개선] 공개시장 매각 등 허용

□ 등기-경매체계 개편 등 제도시행을 위한 실무작업 조속 준비

① (등기) 원활한 권리관계 파악을 위한 '일괄등기시스템*' 도입, 자영업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등기 허용(대법원규칙 개정)

* [현행] 동산, 채권, 지식재산권별로 등기부 분리(한 기업이 다수 등기부 보유)
→ [개선] 기업 단위로 하나의 동산 일괄등기부만 보유

② (경매) 현재 개별자산별 경매만 가능하나, 기업자산의 잔존 가치 제고 등을 위한 담보자산 '일괄경매' 방식·절차 마련

③ (평가) 일괄담보제도 안착을 위해 집합자산 가치평가, 담보물 사후관리 등에 대한 금융권 공동가이드라인* 마련

* (예) 집합자산의 시너지가치 평가·측정기준, 다양한 異種자산 보관·관리절차 등

② 금융권 공동의 동산담보 평가 - 회수시스템 구축

□ (공동 DB) 동산담보 유형별 평가·회수액, 권리·이력정보 등을 집중하여 금융권 동산담보 데이터베이스 구축(신용정보원)

* 금융권 활용방안 : ① 동산유형별 담보인정비율 및 한도·금리 산정,
② 이중담보 여부, 이력정보(사고·이동·변형 등) 파악 등

□ (회수지원) 동산담보 대출 부실시, 캠코가 ① 담보물 매각대행, ② 직접 매입, ③ 부실채권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 지원

○ 향후 캠코 - 민간부문간 협업방식 모델 활성화*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회수시장 성장 지원

* (예) 캠코가 직접 매입한 기계류 매각시 민간 기계거래 업체에 위탁 등

③ 일괄담보 등 기업대출 활성화 유인체계 마련

- 일괄담보제도 안착 등을 위한 '특례보증*(신보, 5년간 1조원)' 및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**(산은, 연 2천억원) 지원 확대

*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우대보증 제공(최대 5억원, 보증료 0.2%p 인하)

** 산은이 은행에 저금리 자금공급 → 은행이 자체평가를 거쳐 대상업체, 대출금액 등 결정(한도, 금리 등 우대 가능)

- 은행 예대출(대출금/예수금) 산정시 기업대출에 인센티브(가중치 △15%)를 부여하는 등 건전성 규제부담 완화

* [현행] 기업대출 100억원에 대해 예수금 100억원 필요 → [개선] 기업대출 100억원에 예수금 85억원만 필요, 예수금 부담 감소분(15억원)만큼 가계대출 증가억제 유인

(2단계) 미래성장성·수익성 평가 인프라 마련 (~2020년)

① [기술평가] 기술 - 신용평가를 통합한 여신심사모형 내재화

- 기술평가-신용평가 일원화 추진 → 기술력이 있으면 '신용등급'까지 개선*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 마련

* [현행] 기술금융이 보조지표로 활용되어 신용등급 자체는 변경 불가 → [개선] 기술금융 평가결과에 따라 신용등급도 변동 가능

- 금년 중 통합여신모형의 유효성 평가를 시행하고, '20년부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

- 新기술, 新산업 분야 심사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심사인력 및 전담조직 확보 등 금융권 공동가이드라인* 마련

* (예) 전문심사역 요건 제시, 일정규모 이상 전담조직 마련, 은행본부-지점간 전결권한 명확화 등

- 통합여신심사 모형 활용이 높은 우수 은행에 신·기보 출연료 감면, 정책금융 확대 등 인센티브 강구

② [성장성 평가] 기업영업력 등 미래성장성 파악 인프라 구축

□ 기업경쟁력, 상거래 정보 등 우량정보 생산·유통 활성화

- ①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망, 유사기업 대비 경쟁도 및 기술우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'기업다중분석 DB*' 구축(신용정보원)

* 기술금융 DB(18만개 기업, 975만건 특허·기술 등 보유) 활용·체계화

- ② 기업간 상거래 현황(매출채권 발생·회수, 지급결제 신용도 등)을 지수화하여 활용하는 '기업상거래 신용지수'(Paydex*) 마련

* 중소기업 상거래정보DB 구축(신보) → 민간 CB社가 거래위험·한도 등 제시

※ (Paydex) 미국은 기업간 거래의 지급결제 신용도를 점수화 → (예) 사전에 약정한 결제기일 보다 일찍 결제하는 기업은 점수 상승

- ③ 전자상거래, 외상매출채권 등 다양한 非금융 데이터의 체계적 활용을 위해 민간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*(신용정보법 개정)

* (예) 금융기관 출자의무(50% 이상) 폐지, 최소자본금(50억원) 완화, 기업 정보조회업(CB) 진입요건 완화 등

※ (사례) △△시장에서 수집한 도·소매업자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시장상인 대상 전문 신용평가모형 개발 → 소상공인 대출 기반 확대

□ 자금흐름, 고객기반 등 미래성장성 기반 대출* 시범실시(기은, 2천억원)

* 온라인 쇼핑몰, 회계관리업체 등과 제휴하여 기업의 영업력 평가를 기반으로 한 대출모형 개발 등

③ [정책금융] 미래성장성 기반 보증심사제도 시범 운영

□ 기업의 미래 가치·성장성 등을 통계적으로 점수화하여 보증심사에 반영하는 '新보증심사 제도' 도입(신보)

-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무능력 추정모델* 마련

* 자영업자 업황·매출액 등을 토대로 110여개 표준재무제표를 개발·활용

[3단계]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 구축 (~2021년)

□ 「모든 자산 + 기술력 + 미래성장성」 등을 통합한 여신시스템

□ 기술력 외에도 동태적 영업력 등 질적 성장요소를 재무적 관점의 여신심사 과정에 반영*하는 방안 추진

* 동태적 영업력 등이 부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관련 평가모형의 고도화 등 지속 추진 → 충분한 데이터 축적 후 신용평가모형에 반영

○ 기업의 「유·무형 자산 + 기술력 + 영업력 등 미래성장성」을 종합평가 후 '대출승인 → 한도결정 → 금리산정' 전반에 활용

※ 외국은 '기업담보제'를 통해 기술력·영업력 등이 담보로 인정되나, 우리는 법정 재산권만 담보화 가능 → 「기업담보법」 제정도 중장기 검토

< 활용사례 >

▶ (현재) 의약품 연구소에서 다년간 재직한 A씨가 창업한 K화장품 회사는 자산가치·매출액은 작지만 특허권·기술역량 등 성장잠재력 풍부함에도 담보부족으로 **대출 거절**

(1단계 개선後) 다양한 자산(특허·생산설비·재고자산·채권 등)을 일괄담보화하여 담보가치와 안정성 증대 → **담보능력 제고로 대출 승인(신용등급은 불변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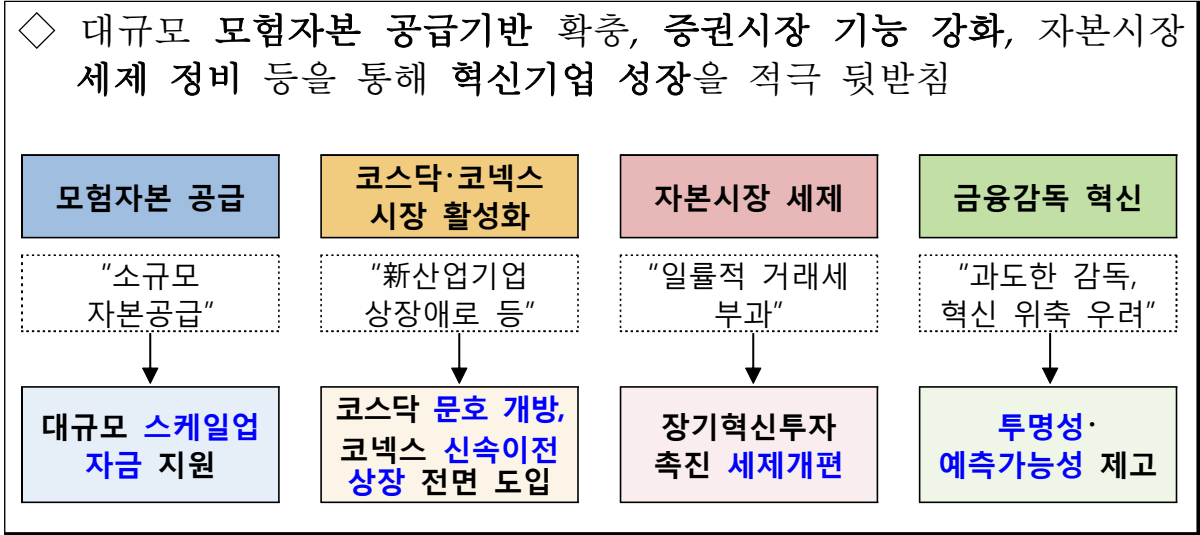
(2단계 개선後) 기술인력 수준, R&D 역량, 유사기업대비 기술우위 등 기술요소가 신용평가에 내재화 → **기업 신용등급도 상승해 담보외 신용대출 가능**

(3단계 개선後) 재무제표, 기술력 외에도 고객기반·매출처(영업력) 등 포괄적 상환능력을 반영 → **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총체적 상환능력이 높게 평가되어 신용등급 추가 개선과 함께 높은 한도와 저금리 자금 이용가능**

⇒ 혁신·중소기업에 대해 일괄담보, 미래성장성 평가에 기반한 자금을 향후 3년간 100조원 공급

* 기술금융 90조원, 일괄담보대출 6조원,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

2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



1.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

① 혁신기업 대규모 성장자금 지원시스템 마련

□ 성장 유망기업에 대해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「성장지원펀드」 운영방식 개편

① 시중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장지원펀드의 **주펀드 대형화 유도**(건당 평균투자액 200억원 → 400~500억원 수준으로 확대)

- (현행) 정책금융기관(산은, 성장금융)이 **주펀드 규모와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사전설정**(예: 1,000억원규모 펀드, 정책자금 300억원 지원)
- (개선) 운용사가 **자율적으로 주펀드 규모를 설정하면** 이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(예: 5,000억원 설정시 1,500억원 지원)

※ 금년부터 적극적 모험투자·후속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5,000억원 이상 대형 펀드조성 유도

② 개별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(펀드의 20~25% 수준) 폐지

- (현행) 5천억원 주펀드이면 1천억원까지 동일기업 투자 가능
- (개선) 최대 5천억원까지 동일기업 투자 가능

③ 既투자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 투자시 운용사 인센티브 제공
→ 기업 성장경로에 따른 연속적인 투자 유도

* (예) 既투자기업에 추가 투자하여 M&A 등을 통한 사업확장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금융 수익의 일부(2~10%)를 운용사 보수로 추가 제공 등

④ 성장지원펀드 등을 활용하여 8대 핵심선도산업 등 新성장분야 스케일업 지원기반 지속 확대 → 5년간('18~'22년) **15조원 조성***

* (既추진)'18~'20년 8조원 + (추가) 성장지원펀드 등 스케일업펀드 '21~'22년 7조원

※ 「제2벤처 붐 확산전략(3.6일)」에서 '19~'22년간 **12조원** 스케일업펀드 조성 발표
→ 연도별 조성계획(조원): ('18) 3.0 ('19) **2.5** ('20) **2.5** ('21) **3.5** ('22) **3.5**

② 민간 모험자본 공급 저변 확대

□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, 개인전문투자자 적극 육성

※ 既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('18.11월)를 차질없이 추진

① 10% 지분보유 규제 철폐 등 복잡다기한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

② 기관투자자(금융회사, 연기금 등)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'기관 전용 사모펀드' 도입 → 금융당국의 검사·감독 등 최소화

③ 해외에 비해 과도한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·절차* 개선
(개인전문투자자를 현 2천명 → 최대 40만명 수준까지 확대)

* (예) 투자경험 :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→ 5천만원 이상

□ 초대형 IB 등 증권사의 혁신·벤처투자 확대 인센티브 마련

○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조달한도(자기자본의 200%) 산정시, 혁신·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

○ 증권사가 혁신·벤처기업 투자시 건전성 규제(NCR 등) 부담 완화

* (예) 증권사가 PEF GP 업무 수행시 연결NCR 위험액 산정기준 개선 등

□ 기업이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및 상장 활성화 방안* 검토

* (예) 최소 발행주수(50만주), 분산요건(25%) 등 우선주 상장요건 완화 등

2. 코스닥·코넥스시장 활성화

① 바이오·4차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코스닥 상장기준 마련

□ 바이오·4차산업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기준 마련

※ 현재 전통 제조업을 기준으로 마련된 상장기준을 쏘산업 공통 적용
(예 : 주력제품의 경쟁력, 매출확장성 등)

< (예시) 바이오산업 맞춤형 상장기준(案) >

구분	현행	개선
①성장성	제품 경쟁력 등	신약개발시 시현될 수익 등
②기술력	지적재산권, 기술인력 등	원천기술 보유여부, 생산설비 등
③재무상황	동종업계 비교 재무상황 등	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 (임상단계별 성공가능성 등 고려)

□ 재무제표 중심의 과거실적을 벗어나 기업 성장성 등 미래지향적 '핵심심사지표*' 개발

* (예) [현행] 주된 매출처와의 거래실적 등 →
[개선] 신약·신제품 개발시 매출확장 가능성 등

□ 새로운 상장심사 체계 구축에 맞추어 업종별 특성 등이 반영된 맞춤형 상장 유지·폐지 요건*도 마련

* (예) [현행] 상장 이후 연 매출 30억원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→
[개선] 바이오 평균 임상 소요기간(6~7년)동안 관리종목 지정 면제

② 우수 기술기업 코스닥 특례 상장 활성화

□ (현행) 기술기업이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평가기관의 기술력 평가에 더해 거래소도 기술력 평가 실시

→ 기술력에 대한 거래소의 중복 평가로 상장 불확실성 증가

□ (개선) 외부 평가기관의 우수기술 평가(예: 평가등급 AA 이상)를 받은 경우 거래소의 별도 기술평가 면제

③ 코스닥시장 자율성·독립성 제고

- 코스닥시장이 벤처·중소기업 전용시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율성·독립성 강화방안 강구

※ 그간 ①코스닥위원장 분리 선출, ②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시장 배점 상향, ③코스닥본부 예산편성 자율성 부여 등 旣 추진('18.1월,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)

- 코스닥 시장위원회 의 코스닥본부 조직(부서·팀 등) 설치·변경·폐지 권한을 완전 자율화(거래소 협의절차 폐지)
- 코스닥본부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기근속(예: 3년, 희망자는 5년) 도입 및 VC·벤처유관단체 파견 근무제도 운영 등

④ 코스닥 상장예정법인의 회계감리 부담 완화

- 회계감리로 인한 상장소요기간 장기화 및 상장포기 사례가 발생

※ 회계감리로 인한 상장부담 사례

- ▶ (상장소요기간 장기화) 회계감리로 거래소 상장까지 최대 약 8개월 지연
→ 회계감리를 받지 않는 경우 평균 상장소요기간은 약 3.5개월
- ▶ (감리 장기화 등으로 상장 10% 철회) '18년 상장예정법인 감리결과(총 102개) 감리실시 기업 총 60개 중 10개는 감리 장기화 등으로 상장 철회

- ➔ 회계감리 기간 단축(예: 9개월→3개월) 추진, 회계감리 대상 선정 절차 개선* 등을 통해 상장 예측가능성 제고

* (예) 대상기업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, 감리일정 조기 통지 등

⑤ 코넥스 → 코스닥시장 신속이전 상장제도 전면 도입

※ 신속이전 상장제도 : 일정요건* 충족시 심사기간 단축(45일→30일)

- * ① 매출액 100억원 이상, 영업이익 시현 등, ② 당기순익 20억원 이상, ROE 20% 이상 등 정량요건을 충족할 것

- 이익미실현 기업*에 대한 신속이전 상장제도 도입

* 이익미실현(적자기업)이지만 시장평가가 우수한 경우(예: 시총 2천억원)

□ 코넥스시장에서 경험·평판을 축적한 기업*은 정성평가** 중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

* 코넥스 상장 후 1년 경과, 지정자문인(6개월 이상 자문) 추천 등

** ①기업계속성:기업의 상장 이후 매출·이익 유지 가능성, ②투명성:내부통제 등 기업지배구조 투명성, ③안정성:대주주의 경영안정성 등

□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*은 기업계속성에 더해 안정성 심사도 면제

* (예) ①최대주주 지분 30%이상 1년 이상 유지, ②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을 것, ③거래소 운영 이전상장 특화교육 이수 등

	현행	개선 허용
①이익미실현 기업	신속이전상장 불가능	
②코넥스 경험기업	상장 이후 상장유지 가능성을 거래소가 심사	시장평판 등을 통해 결정
③지배구조 우수기업	일반기업과 동일한 심사	질적심사 사실상 면제

➔ 신속이전상장 대상기업수가 30개(전체의 약 20%)로 대폭 확대 예상

6 코넥스시장 수요·공급기반 확대

□ 개인투자자 진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에 필요한 예탁금 수준을 현행 1억원 → 3천만원*으로 인하

* 개인투자자 중 전문투자자의 경우 예탁금 없이도 투자 허용

□ 시장 유통주식수 부족* 해소 등을 위한 주식분산요건 도입

* 코넥스기업(149개) 중 56개사는 소액주주 지분율 10% 미만으로 거래 부진

※ 현행 시장별 주식분산의무 : (코스피) 10%, (코스닥) 20%, (코넥스) X

○ 최대주주·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주주 지분을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시 5% 이상 분산토록 의무화

※ 다만,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 1년간 유예기간 부여 가능

□ 코넥스 기업에 대해 비상장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예외적으로 허용

○ ①상장 후 3년간 클라우드 펀딩을 허용하고, ②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증권발행이 가능한 소액공모 방식도 허용

3. 자본시장 세제 개편

1 증권거래세율 인하

□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 인하('19년중)

- 코스피, 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0.05%p 인하
- 코넥스 시장의 경우 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을 더욱 확대(0.2%p)

* (영국 사례) 한국 코넥스시장과 유사한 AIM(Alternative Investment Market)에 대해 거래세를 면제('14.4월)한 이후 거래대금이 2배 가량 증가

< 증권거래세율 인하(案) >

	코스피	코스닥	코넥스	비상장
농특세	0.15% → 유지	없음	없음	없음
거래세	0.15% → 0.10%	0.30% → 0.25%	0.30% → 0.10%	0.50% → 0.45%
계	0.25%	0.25%	0.10%	0.45%

2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추진

□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

- (단기)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

*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'20.1.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- (중장기)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하여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 마련

-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·이월공제·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 마련

[예시]

- ① 주식, 펀드,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 여부 검토
- ②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 검토
- ③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 강구

4. 금융감독 혁신

① 금융감독의 투명성·예측가능성 제고

- 모험자본 공급 등을 통해 산업의 혁신적 시도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불확실성 제거
 - '규제입증책임 전환' 원칙하에 비명시적 행정지도 등을 포함한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착수
 - * 민간 위원 과반수로 '금융규제 정비위원회'를 구성(3월)하여 추진동력 확보
 - 新산업분야 투·융자 등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비조치 의견서, 법령해석 등 적극 제공

② 적발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 개선, 사후 검사품질관리 강화

- 금융회사 '핵심부문 취약점 진단 → 개선유도' 방식을 통해 검사 효율성 제고 및 수검부담 완화*
 - * 종합검사 실시전후 부문검사 미실시, 사전 검사요구자료 최소화, 검사대상 선정 사전고지 등 금융회사 부담경감 방안 강구
- 종합검사 실시 후 외부기관에 의한 검사품질관리 엄격 실시
 - 검사 등 금감원 주요업무에 대해 소비자·금융회사 설문조사, 의견청취 등 실시 → 성과평가에 비중있게 반영(예:10%) 추진

③ 인·허가, 제재관련 요건·절차 명확화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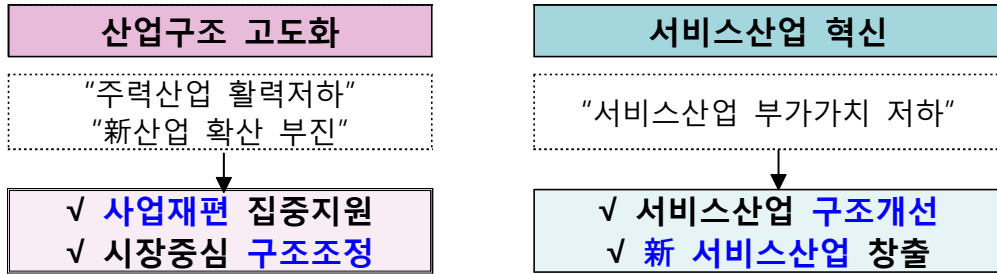
- 인·허가 재량권 행사 관련 구체적 기준 마련 및 대외공표
- 과잉제재 논란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행위의 동기·정도 등에 상응하도록 제재양정 기준* 합리화

* 新산업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고의·중과실이 아닌 한 면책·감경 적극 활용

3

선제적 산업혁신 지원

- ◇ 전통적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대규모 중장기 자금공급 확대



1.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확대

①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시스템 마련

- 중소·중견기업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* 규모의 초장기자금 (최대 15년)을 안정적으로 공급(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)
 - * [산은] 예비중견·중견기업 중심 7조원, [기은] 중소기업 중심 3조원
- 자금소진 추이 등을 보아가며 규모 추가 확대(+2.5조원)
- 기활법 승인기업 등 주력산업 분야 중소·중견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에 최우선 지원
 - 기활법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수반되는 설비증설·운영, M&A,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R&D 등에 우선 자금공급
 - 사업전환 및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한 신시장 진출 등 일반 기업의 사업재편 노력도 폭넓게 뒷받침
- 정부 R&D 자금지원기업 및 상생투자 연계지원도 확대
 - 정부 R&D 자금지원기업은 시제품제작-양산 등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별도 특별자금 배정·지원(예:1조원)
 - 대기업 조성 클러스터 입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등을 통해 대중소 상생협력 기반 강화

②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

□ 채권회수 극대화(채권금융기관)에서 경영정상화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(자본시장)로 기업구조조정 패러다임 전환

▶ (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의 한계) ①부실채권 관리 중심의 접근방식으로 인해 선제적 구조조정이 불가능 ②경영정상화보다는 채권회수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기업회생 미흡, ③PEF, LBO 등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 활용에 제약

①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방식 혁신을 통해 부실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회생(Turn-around) 지원 기능 강화

- 재무구조 개선 중심에서 사업재편·경영개선* 등으로 전환

* 전문경영인 영입, M&A, 사업양수도 등 사업구조조정 기반 강화

- 정책금융기관 보증 연계*, 민간 PEF 공동투자, P-Plan 활용** 등 구조조정 방식을 다양화하여 기업특성에 맞는 지원 추진

*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, 수출금융 지원 활성화 가능

** 법원회생 신청시 채무조정 사전계획안 제출을 통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종료
→ 과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이 가능해 기업의 회생가능성 증가

- 시장수요 및 정책금융 여력을 보아가며, 펀드 운용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

② 부실채권(NPL)시장을 민간중심 시장으로 전환하고, 유암코는 아직 성장초기 단계인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의 역할 확대

* '18년말 기준 유암코 투자잔액 : NPL 2.6조원 > 기업구조조정 1.4조원

③ 산은이 출자회사 관리를 전담하는 별도 AMC 설립 중 → 추후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 육성

< 활용사례 >

▶ (채권금융기관 중심 구조조정) 굴삭기 제조기업 D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, 대규모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으로 채권금융기관주도 워크아웃 실패 → 회생절차 개시

(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 後) 채권회수가 우선순위인 채권은행과 달리, 기업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PEF의 과감한 투자(700억원)로 재무구조개선 및 회생계기 마련

2. 서비스산업 혁신 견인

① 유망서비스 산업에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

- 산은, 기은,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선도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마중물 자금공급 대폭 확대

< 정책자금 공급계획(案) >

연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계
금액(조원)	10.8	11.4	12.0	12.6	13.2	60.0

- 4대 유망서비스산업*을 우선 지원하되, 추후 업종별 서비스 산업 혁신방안 등과 연계하여 추진

* 관광, 헬스케어, 콘텐츠, 물류('19년 경제정책방향)

② 서비스산업 구조개선 및 新서비스 창출 집중지원

- 빅데이터, ICT 등 신기술과 연계하여 관광·물류 등 전통 서비스산업 고도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

[예시]

- ① (물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) 일별 배송정보를 축적하여 소비자의 물류 서비스 이용패턴을 분석 → 실시간 교통상황·지리정보와 결합하여 최적 배송경로 도출 및 공차율 최소화
- ② (플랫폼 기반 숙박중개 서비스)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장기 숙박을 원하는 여행객과 호스트를 연결하고 해당 지역의 음식·체험활동 안내서비스 제공

- 헬스케어, 여가활동 수요 확대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新서비스 분야의 활성화 유도

[예시]

- ① (정밀의료 산업) 개인의 유전체 및 진료정보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 (유전체 의학) 및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-진단-치료 통합 서비스
- ② (전자책 서비스) 전자책, 오디오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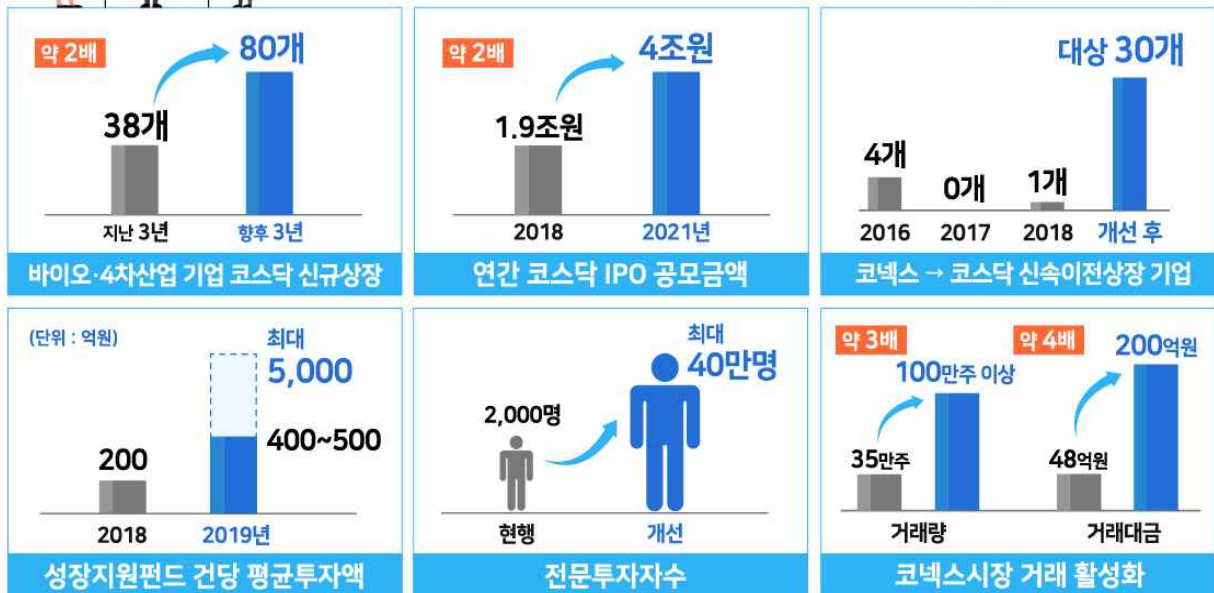
IV. 기대효과



기업여신심사 시스템 전면 개편 (신규 공급액 기준)



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



선제적 산업혁신 지원



V. 향후 추진계획

- 혁신금융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 등으로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상반기 중 마무리
 - 법률개정 필요사항은 조속한 국회통과 노력 강화
- '민·관 합동점검반'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등 지속

추진과제	조치사항	일정
1. 기업여신시스템 전면 혁신		
(1단계) 일괄담보제도 정착		
① 동산담보법 개정 등	동산담보법 개정안 마련 (법무부)	'19.上
	실무작업 준비	'19.上
② 금융권 공동 평가·회수 인프라 구축	공동DB 구축	'19.上
	회수지원기구 마련	'20.上
③ 기업대출 활성화 유인체계 마련	특례보증 확대	'19.上
	은행 예대율 규제개선	'20~
(2단계) 미래성장성·수익성 평가 인프라 마련		
① 기술 - 신용평가 통합 여신심사모형 내재화	가이드라인 마련	'19.下
② 기업다중분석 DB, 상거래신용지수 마련	관련 인프라 구축	'20.上
	기업CB 진입요건 완화	'19.上
③ 新보증심사제도 시범운영 등	심사체계 개편 (연구용역 진행 중)	'19.下
(3단계)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 구축	연구용역 추진 및 은행권 적용 검토	'20~
2-1.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		
① 성장지원펀드 운용개선		
운용사의 펀드규모 제안	신규펀드 결성시 반영	'20.上
동일기업 투자한도 폐지		'19.上

㉔ 민간 모험자본 확대		
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등	자본시장법 개정 추진	'19.上
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	'19.上
증권사 혁신·벤처투자 인센티브 마련	금융투자업규정 개정	'19.上

2-2. 코스닥·코넥스시장 활성화

㉕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 마련		
4차산업 등 업종별 심사방안 마련	코스닥 규정 개정	'19.上
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상장심사 요건 정비	코스닥 규정 개정	'19.上
㉖ 우수 기술기업 특례 상장 활성화	코스닥 규정 개정	'19.上
㉗ 코스닥시장 자율성·독립성 제고	코스닥 관련 규정 개정	'19.下
㉘ 상장예정법인 회계감리 부담 완화	관계기관 MOU 체결	'19.上
㉙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제도 전면 도입	코스닥 규정개정	'19.上
㉚ 시장 수요·공급기반 확대		
개인투자자 진입 활성화, 주식분산요건 도입	코넥스 규정개정	'19.上
코넥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	자본시장법 개정	'19.下

2-3. 자본시장 세제 개편

㉛ 증권거래세율 인하	세법 시행령 개정 (기재부)	'19.上
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추진	개선방안 마련 (기재부)	'20년중

2-4 금융감독 혁신

금융당국의 감독·검사·제재 혁신	혁신방안 마련	'19.上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

3-1.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확대

㉝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시스템 마련	프로그램 운영	계속
㉞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	세부방안 마련	'19.下

3-2. 서비스산업 혁신 견인

산은·기은·신보 등 자금지원방안 마련	세부방안 마련 (관계부처 협의)	'19.下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